국세청 nts.go.kr

납 세 증 명 서

발급번호	2323-855-9674-320	처리기간	즉시(단, 해외이주용 10일)
납세자 인적사항	성명(상호) 로얄앤컴퍼니주식회사	주민등록번호 (사업자등록번호)	122-81-06434
	주소(사업장)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시청로 895-20, 1층		

증명서의 사용목적

[ ] 대금수령
[ ] 해외이주 (이주번호 제 호, 이주확인일 년 월 일)
[✔] 기 타

증명서의 유효기간

유효기간	2025 년 12 월 31 일
유효기간을 정한 사유	[ ] 「국세징수법 시행령」 제96조 제1항 [✔] 기 타 (사유: 납부기한등연장)

연장·유예 내역 (단위 : 원)

연장·유예 종류	연장·유예 기 간	과세기간	세 목	납부기한	세 액	가 산 금
납부기한등연장	2025.12.16 ~ 2026.05.29	2025	종합부동산세	2025-12-31	6,745,290	0
납부기한등연장	2025.12.16 ~ 2026.05.29	2025	종합부동산세	2026-01-30	6,745,290	0
납부기한등연장	2025.12.16 ~ 2026.05.29	2025	종합부동산세	2026-02-27	6,745,290	0

물적납세의무 체납내역 (단위 : 원)

위탁자·양도담보설정자	과세기간	세 목	납부기한	세 액	가 산 금
해 당 없 음					

「국세징수법」 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발급일 현재 위의 연장·유예액 또는 「국세기본법」 제42조, 「종합부동산세법」 제7조의2·제12조의2 또는 「부가가치세법」 제3조의2에 따른 양도담보권자 또는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와 관련된 체납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합니다.

※ 발급일 현재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미납국세는 체납액이 아니므로 증명 대상에서 제외됨.

접수번호	504938803233
담당부서	민원봉사실
담 당 자	
연 락 처	031-8019-1226

2025 년 12 월 16 일

화 성 세 무 서 장 (인)

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

* 본 증명의 위·변조 여부는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「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또는 모바일 홈택스 > 민원증명(증명발급) > 민원증명 원본확인」에서 발급번호로 확인, 또는 문서 하단의 바코드로 확인이 가능합니다.
(공문서를 위·변조하거나 행사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.)

* 본 증명은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서 대민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발급된 증명서입니다.

국세청 nts.go.kr

납 세 증 명 서

발급번호	2323-855-9674-320	처리기간	즉시(단, 해외이주용 10일)
납세자 인적사항	성명(상호) 로얄앤컴퍼니주식회사	주민등록번호 (사업자등록번호)	122-81-06434
	주소(사업장)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시청로 895-20, 1층		

증명서의 사용목적

[ ] 대금수령
[ ] 해외이주 (이주번호 제 호, 이주확인일 년 월 일)
[✔] 기 타

증명서의 유효기간

유효기간	2025 년 12 월 31 일
유효기간을 정한 사유	[ ] 「국세징수법 시행령」 제96조 제1항 [✔] 기 타 (사유: 납부기한등연장)

연장·유예 내역 (단위 : 원)

연장·유예 종류	연장·유예 기 간	과세기간	세 목	납부기한	세 액	가 산 금
납부기한등연장	2025.12.16 ~ 2026.05.29	2025	종합부동산세	2026-03-31	6,745,290	0
납부기한등연장	2025.12.16 ~ 2026.05.29	2025	종합부동산세	2026-04-30	6,745,290	0
납부기한등연장	2025.12.16 ~ 2026.05.29	2025	종합부동산세	2026-05-29	6,745,310	0

물적납세의무 체납내역 (단위 : 원)

위탁자·양도담보설정자	과세기간	세 목	납부기한	세 액	가 산 금
해 당 없 음					

「국세징수법」 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발급일 현재 위의 연장·유예액 또는 「국세기본법」 제42조, 「종합부동산세법」 제7조의2·제12조의2 또는 「부가가치세법」 제3조의2에 따른 양도담보권자 또는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와 관련된 체납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합니다.

※ 발급일 현재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미납국세는 체납액이 아니므로 증명 대상에서 제외됨.

접수번호	504938803233
담당부서	민원봉사실
담 당 자	
연 락 처	031-8019-1226

2025 년 12 월 16 일

화 성 세 무 서 장 (인)

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

* 본 증명의 위·변조 여부는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「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또는 모바일 홈택스 > 민원증명(증명발급) > 민원증명 원본확인」에서 발급번호로 확인, 또는 문서 하단의 바코드로 확인이 가능합니다.
(공문서를 위·변조하거나 행사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.)

* 본 증명은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서 대민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발급된 증명서입니다.